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규칙」

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1011호, 2023. 7. 28., 일부개정]	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1033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<p>제46조(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</p> <p>1.1의2. (생략)</p> <p>2.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</p> <p>가.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(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)</p> <p>나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50</p> <p>3.4. (생략)</p>	<p>제46조(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</p> <p>1.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</p> <p>가.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(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)</p> <p>나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50</p> <p>3.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·담배·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(이하 이 항에서 “별도면세범위”라 한다)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, 19세 미만인 사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)이 반입하는 술·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,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·담배·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·담배·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(이하 이 항에서 “별도면세범위”라 한다)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, 19세 미만인 사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)이 반입하는 술·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,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·담배·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.</p>

구분	면세한도		비고	
술	2병		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(L) 이하,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.	
담배	궐련	200개비	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.	
	엽궐련	50개비		
	전자담배	궐련형		200개비
		니코틴용액		20밀리리터(mL)
		기타유형		110그램
그 밖의 담배	250그램			
향수	60밀리리터(mL)			

④ ~ ⑦ (생략)

제50조(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) ①
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구분	면세한도		비고	
술	2병		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(L) 이하,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.	
담배	궐련	200개비	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.	
	엽궐련	50개비		
	전자담배	궐련형		200개비
		니코틴용액		20밀리리터(mL)
		기타유형		110그램
그 밖의 담배	250그램			
향수	100밀리리터			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) ①
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3. (현행과 같음)

24.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

가.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

나.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·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

② (현행과 같음)